

제309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「임실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 합니다.

2021. 6. 4.

임실군의회 의장



1. 개정이유

목욕권의 액면가(지원기준)를 예산의 범위내로 조정하여 물가상승에 따른 목욕비 인상 등 상황변화에 대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4조(지원기준) 임실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목욕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- (현행) 1. 목욕비는 “1매당 4,000원 이내의” 목욕권으로 발행하여~
- (개정) 1. ----- “매년” ----- ~

3. 참고자료

가. 관련법령 : 「노인복지법」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

나. 예산조치: 1회 추경예산 편성 요구

- 소요예산 : 35,000천원

대상인원	'21예산액	소요액	증감	비고
7,000명	364,000	399,000	35,000	7,000명×1,000원×5매(하반기)

* '21.7월부터 목욕비 지원기준 4,000원(1매)을 5,000원으로 증액 지급

- 일반 목욕업소 이용요금 인상 및 작은목욕탕 이용요금(노인)과의 형평성 고려

다. 협의 등

- 1) 부패영향평가/규제심사: 원안동의
- 2) 성별영향평가: 원안동의

라. 기타

- 1) 입법예고(2021. 5. 3. ~ 2021. 5. 22.) 결과: 특이사항 없음
- 2) 비용추계서: 붙임
- 3) 관련법령 발췌문: 붙임

임실군 조례 제 호

임실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임실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만65세”를 “만 65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「임실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」”를 “「임실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제4조제1호 본문 중 “1매당 4,000원 이내의”를 “매년”으로 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제2항의 규정”을 “제2항”으로 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없는 한”을 “없으면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노인”이란 주민등록법상 <u>만 65세</u>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.</p> <p>2. “작은 목욕탕”이란 「<u>임실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</u>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은 목욕탕을 말한다.</p> <p>3. (생략)</p> <p>제4조(지원기준) 임실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목욕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목욕비는 <u>1매당 4,000원 이내</u>의 목욕권으로 발행하여 분기별 1인 4매를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여름철 비수기인 3/4분기에는 1매만 지원한다.</p> <p>2. (생략)</p> <p>제5조(지원 절차) ①·②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만 65세</u> -----.</p> <p>2. ----- 「<u>임실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</u>」 ----- -----.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지원기준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매년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지원 절차) ①·② (현행과</p>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읍면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복지이장 등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.

제8조(목욕요금의 청구) ①·②
(생략)

③ 군수는 지급청구서에 미비점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,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같음)

③ 제2항-----

-----.

제8조(목욕요금의 청구) ①·②
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없으면 -----
-----.

임실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가. 비용발생 요인 : 노인 목욕비 액면가(지원기준액) 상향 지원
 나. 관련조문 : 임실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제4조(지원기준)

2. 비용추계의 결과

- 가. 추계의 전제
 - 만 65세이상 노인 (작은목욕탕 이용 어려운 지역)
 나. 추계의 결과
 - 35,000천원 / 년 (추가소요액)

다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(단위: 명, 천원)

년도	대상인원	당초예산	추가소요예산	산출내용
2021	7,000	346,000	35,000	7,000명×1천원(증액)×5매(하반기)

- 라. 재원조달방안 : 군비 전액
 마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별첨

3. 작성자

○ 주민복지과장 김인숙

〈 연도별 비용 추계표 〉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계
세 입		-	-	-	-	-	-
세 출		35,000	91,000	91,000	91,000	91,000	399,000
노인 목욕비 지원 (추가소요액)		35,000	91,000	91,000	91,000	91,000	399,000
재원 조달							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						
자체 수입	소 계	35,000	91,000	91,000	91,000	91,000	399,000
	지방세	35,000	91,000	91,000	91,000	91,000	399,000
	세외수입						
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특별회계							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

노인복지법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